

<붙임 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제1항, 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 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7. 제7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 또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제2항 및 제161조제3호에 따른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8. 그 밖의 주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제12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이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